

**2024학년도 2학기 (2024.09.01. ~ 12.31.)**

**「현장실습 기업」 참가 신청 안내**

**2024. 07.**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1. 동국대 현장실습 주요 내용

## ■ 참여 가능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 최저임금 수준 보장하여 지급 원칙(2024년 월 기준 2,060,740원)
- 산재보험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사항)
- **상시 근로자 수 10% 이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현장실습 불가능 기업체  
: 소비 향락단체, 영업정지, 징계 중,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 업체, 인력 파견업체, 연수내용이 단순 노무직종인 경우, 전문직 의무연수기관 등
-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 ■ 인정 근무 기간

- 2024.09.01. ~ 2024.12.31. 中 출석일 60일(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16주) 이상
- ※ 월차,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은 출석일에서 제외

## ■ 지원 학생 자격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2학기 이상 이수 학생)
- 2024년도 2학기 재학생

# 1. 동국대 현장실습 주요 내용

## ■ 근무(실습) 시간

- 학점 인정을 위한 근무 시간 (※ 월차, 법정공휴일, 참정권행사일 제외)
  - 1) 9학점: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480 시간 이상 근무
  - 2) 12학점: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근무
- 연장근무(18시~22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가능
- 야간근무(22시~익일 6시): 불가능(금지)
- 현장실습 1개월 만근 후 1일의 휴일 사용 가능
  - 1)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휴일 2일 사용 가능
  - 2)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휴일 3일 사용 가능
- 출석일수 부족 시 학점인정 불가
- 업무 특성상 근무 요일이 월~금요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파트타임제는 신청 불가)

## ■ 학점인정 기준

- 학점 환산 기준: 실습시간 160시간 { 8시간(1일) × 5일(1주) × 4주 } = 3학점 [법정 공휴일 제외, 순출석일]
- 이수구분: 전공(전문)
  - \* 학점인정은 학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 필요
- 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학점 인정 범위: 총 18학점
- 전공학점 인정 범위 : 최대 12학점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이 혼합 운영되는 경우, 이론교육은 인정 불가

# 1. 동국대 현장실습 주요 내용

## ■ 현장실습 과제물 제출

	과제 종류	작성자	작성기한	작성방법
①	현장실습 연수보고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현장실습생 (학생)	~2025.01.01.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②	출석부 및 기관평가표	기업 담당자	~2025.01.03.	

## ■ 현장실습 중간점검

- 현장실습기간 내 기업 현장방문 또는 서면으로 중간점검 실시 예정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 (현장실습지원센터)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 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동국대 현장실습 주요 내용

## ■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 ▶기업 → 학생 :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2024년 월 기준 2,060,740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에 따른 최저임금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대학→기업 : 실습지원비
  - 현장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월 기준 2,060,740원) 지급 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 지급
  -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 규정에 따름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 2. 현장실습 기업 참가신청 방법

### ■ 접수처 및 방법

- 신청 서류를 현장실습지원센터 E-mail 로 회신
- 이메일 접수: [dgint@dongguk.edu](mailto:dgint@dongguk.edu)

### ■ 접수기간

- 기업 접수: ~2024.08.02. (금)
- 학생 선발: ~2024.08.09. (금)

### ■ 제출 서류

신규 참여기업	기존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li>-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li> <li>-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b>(기관 직인 날인 필수)</b></li> <li>-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b>(기관 직인 날인 필수)</b></li> <li>-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li> </ul>
<p>※ 협약서(직인날인본)는 학생 매칭 후 기업 요청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p>	

###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2-2260-4941)

### 3. 기타사항 (산재보험 가입)

■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69호)  
 개정에 따라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 '무급 현장실습' 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의 방법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 교육부 / 고용노동부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김지수 주무관	044-203-6259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김영인 차장	052-704-7206

### 3. 기타사항 (산재보험 가입)

■ 현장실습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 방법

1.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사업장 명의 인증서)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2. 상단 메뉴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자고용신고(10501) → 고용관리 /보수관리 비밀번호 입력 → 근로자고용신고 자료 입력

근로자 고용 신고 화면	절차
	1. 사업장 관리 번호, 보험구분 (산재보험) 선택
	2. 산재보험란에 월 평균 보수, 취득일, 보험료 부과 구분 (산재만 부과) 선택, 사유(현장실습생) 선택
	3. 선택 부분 입력 후 대상자 추가
	4.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3. 기타사항 (산재보험 가입)

■ 현장실습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 방법

1.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사업장 명의 인증서)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2. 상단 메뉴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자고용종료신고(10502)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 화면	절차
	1. 사업장 관리 번호, 보험 구분 (산재보험) 선택
	2. 산재보험란에 상실일, 보수 총액, 상실 사유(계약기간 만료), 구체적 사유(현장실습 종료) 선택
	3. 대상자 추가
	4.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출력 방법

1.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사업장 명의 인증서)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2. 상단 메뉴 : 사업장 → 증명원 신청/ 발급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40104) 출력

(※ 신고 후 영업일 기준 약 3일 후 출력 가능)

### 3. 기타사항 (현장실습 운영)

-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의 다음 권고사항에 따라서 현장실습생(수련생)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 권고(고용노동부 2016.02.01. 시행)]

	주요 내용	권고 취지
모집인원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예: 10%내외)을 초과해서 모집 불가. 단, 업종별 규모별 특성 고려 가능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시적 노동력 활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 제시
수련기간	-6개월 초과 금지 단,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 초과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기간 제시
수련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수련 원칙적 금지	-일반근로자의 통산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훈련의 목적 및 취지상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장시간 교육·훈련 방지
관리방식	-담당자 지정을 통한 수련생 관리, 학습일지 작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 담당자 지정이 필요. 담당자를 통한 교육·훈련 수행 체계 확립으로 수시 업무지시 등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 배제
산업안전	-위험하거나 유해한 수련 훈련은 배제, 민간보험 등 적절한 재해 보상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관리·감독	-교육·훈련 목적이더라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에 포함토록 하여 일반근로자에 준하는 산업안전보건 및 성희롱 보호
기타 사업주 의무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복리후생시설 이용 -자유로운 고충 제기 -우선 고용 노력 의무 등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습 비용 및 복지혜택 제공이 필요 -우선 고용 노력 의무를 통한 실습 과정과 채용 연계를 통한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발탁

### 3. 기타사항 (현장실습 운영)

- 교육부 고시(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의 다음 권고사항에 따라서 현장실습생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2021.07.06. 시행)]

	주요 내용	권고 취지
현장실습생 휴무	제 18조 (학생 보호)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실습기관 실습비 지급	제 22조 (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 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 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장/야간 실습 기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 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기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현장실습 중간 점검	제 9조 (현장실습지원센터)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기간 내 중간점검 실시

# 감사합니다

